

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우리 구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6년 1월 15일
도 봉 구 청 장

1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가. 종 류: 가로주택정비사업
- 나. 명 칭: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

2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

- 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도봉구 창동 715-25번지 외 18필지
- 나. 면 적: 6,688.5㎡

3.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

- 가. 착수 예정일: 미정
- 나. 준공 예정일: 미정

4.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

- 가. 명 칭: 창동 신건영빌리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
- 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121, 1층 관리사무소

5. 조합설립변경인가 내용

- 가. 조합임원 변경

6. 조합설립변경인가일 : 2026. 1. 15.